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2. 신청 기한: 2026. 10. 6.(화) 23:59까지 ※ 기한 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신청 방법

- 접속 경로: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장학금 선택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업로드

4.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 시스템 입력 및 저장

나. 증빙 서류(스캔하여 업로드)

※ 최근 3개월 이내(2026년 6월 이후) 발급된 증명서

5. 모든 신청자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정보 입력(최신화)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기본정보 탭 -> 계좌 정보 확인 또는 수정 ->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

6. 신청 장학금

장학금명		세 부 내 용	지급기간	장학금액
국가보훈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 자녀 ※ 지원 기간: 8개 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8개 학기	장학금 전액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출 서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일부	선발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등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 기간: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 8개 학기	8개 학기	장학금 전액
	성적 기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이 성적이 0점인 경우 지급 제외		
	제출 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교육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각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른 기준 적용	-	-
	성적 기준	각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른 기준 적용		
	제출 서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형제·자매	선발 기준	우리 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 연한 이내)인 형제·자매 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해당 학기	80만 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 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계속지급자는 제출 서류 없이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 부(형제·자매)		
나눔(장애)	선발 기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 단, 기 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해당 학기	80만 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 평균 학사경고 초과		
	제출 서류	계속지급자는 제출 서류 없이 신청 장애인증명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동의서(선택)		

장학금명		세 부 내 용	지급기간	장학금액
사회봉사 장학금 (대가성)	선발 기준	직전 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 사회봉사단체에서 6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 참가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정치, 종교, 영리단체,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 봉사 제외) ※ 봉사 기간: 2026학년도 1학기(2026. 3. 1. ~ 2026. 8. 31.)	해당 학기	80만 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 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동문	선발 기준	우리 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 자녀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 중 1회만 지급	해당 학기	등록금의 50%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 누락 (F)없이 평점 평균 2.5 이상인 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다문화	선발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해당 학기	80만 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 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 허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귀화하지 않은 경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다자녀	선발 기준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해당 학기	80만 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 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계속지급자는 제출 서류 없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특성화 장학금	선발 기준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계속 장학생에서 제외된 학생은 학생복지팀으 로 유선 문의	해당 학기	자격 조건별 상이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제출 서류	-		

7. 유의 사항

- 가. 「등록 휴학 후 복학생(이월 등록자)」 중 직전 학기 교내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신청 불가
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가성, 포상성 제외)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2. 삭제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다. 26-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교내 신청 장학금 수혜 금액만큼 우리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 상환 처리(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대가성인 사회봉사장학금은 제외).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라. 모든 제출 서류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방문 제출 없음)

마. 신청 장학금 자격 미달자는 개별 통지(샘물통합정보시스템 - 장학신청 - “처리내용”)

바. 신청 장학금 수혜 여부는 개별 심사 후 11월 30일 이전에 확정되며, 본인의 장학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지급 또한 11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

사. 국가고시 합격자(1차 포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폐지되었으나,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학생복지팀 방문)

아. 나눔(기초)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기초)

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초: 생계/의료, 차상위: 주거/교육)

※ 다만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차상위) 산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해당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람

자.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바로가기: <https://m.site.naver.com/1Eed6>

차. 문의사항: 학생복지팀(02-2287-5016)

2026. 9.

학생처장